

# 2019년도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20.(화요일), 11:00
-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분과위원장 대행)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5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412건(안건번호 제2019-95515호~9796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95515호 단편소설을 감상평과 함께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복제·전송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 본문의 감상평까지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될 수 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안건번호 제2019-95516호~95523호 단편소설과 작가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게시물은 작가 정보 부분이 타인의 출판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안건번호 제2019-95524호~95532호는 음악저작물 등을 무단 이용한 영상물로,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 해당 음원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394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58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15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이견이 없으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함
- B 위원 : 회의록 원안과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95515호~97963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4,412건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95515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본문에 황순원의 단편소설 '별'을 읽은 감상평을 게시하며 소설 전문을 첨부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본문의 표현 등에 비춰 볼 때 게시자가 감상평을 직접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95516호~95523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단편소설의 전체 분량을 게시하면서 줄거리나 등장인물 소개, 작가 설명 등을 덧붙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다운로드 한 첨부파일을 제시하면서)단편소설에 덧붙인 작가 설명 부분의 형식과 내용을 볼 때 복제·전송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타인의 출판물 등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추측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95515호~9552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95515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황순원 작가의 단편소설 전체 분량을 제공하였으므로 양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이나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움

단편소설 전체를 별도로 첨부파일로 제공하였기에 본문의 감상평과 완전히 분리하여 단편소설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다만 게시물 본문의 감상평 자체만 놓고 보면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는 것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

를 할 경우 게시물 본문의 감상평까지 삭제될 수 있음

따라서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95516호~95523호는 단편소설에 덧붙인 작가 설명 등 정보에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복제·전송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소설 전부를 복제하여 전송한 경우와 같이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B 위원 : 나아가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음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95515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 안전번호 제2019-95516호~9552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95524호~9553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이용자들이 최신가요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동영상은 블로그에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해당 영상들은 음원과 함께 음원을 실연한 가수 사진 또는 가사, 드라마 스틸 컷 등을 무단 이용하고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한 곡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어 공정이용이나 인용 등 저작권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A 위원 :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해당 음원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안전번호 제2019-95524호~95532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95533호~9796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95533호~97963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95807호의 저작물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권리자인 영화 '덤보(2019)'인데, 1941년 애니메이션 영화와는 다른 2019년에 개봉한 실사 영화임  
안전번호 제2019-95868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넷플릭스가 권리자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영화)폴라(2019)'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96189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워너브라더스코리아가

권리자인 '(영화)명탐정 피카츄(2019)'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영화의 복제물은 최근 자주 심의 요청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19-96216호의 저작물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권리자인 영화 '(영화)알라딘(2019)'임

안전번호 제2019-97586호 '(만화)쿠로사키 말 따위 안 들을거야(2019)'는 2019년도 출판물로 학산문화사가 국내 출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19-97604호 '(만화)거미입니다만, 문제라도?(2019)' 역시 2019년도 출판물로 국내 회사인 디앤씨미디어가 출판하였음

안전번호 제2019-97639호의 저작물 '(만화)넥스트 라이프(2019)'는 YNK미디어가 출판하였음

안전번호 제2019-97704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수 '앤 마리'의 '2002'라는 곡 외에 수십 곡의 최신 인기가요 음원을 압축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안전번호 제2019-97739호 게시물도 음원파일을 압축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압축을 풀면 가수 '태연'이 부른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OST '그대라는 시' 외에 다수의 음원이 확인됨

안전번호 제2019-97756호부터 제2019-97868호까지는 모두 게임 프로그램의 복제물인데, 2019년도 게임프로그램인 '(게임)더 싱킹 시티(2019)', 2019년도 게임프로그램인 '(게임)기묘한 이야기3(2019)' 등의 게임물을 판매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19-97883호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 '(SW)한컴오피스'를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방송 프로그램, 게임, 만화, 출판물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할 것으로 판단됨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A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95533호~9796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19-95515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제2019-95516호~97963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o 임진모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3.

분과위원장 대행 임진모

위원 박성호